

서 면 답 변 서

질의위원	우 강 호 위원	소 속	평창군 의회 예결특위
답변자	평창군수 (문화관광과장)	일자	질의: 1999년 12월 14일 답변: 1999년 12월 14일
회의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결특위		

【질의요지】

- 평창군청 직장체육부(레슬링팀) 운영지침은?

【답변요지】

- 평창군청 직장체육부(레슬링팀) 운영지침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평창군청 직장체육부 운영지침 1부. 끝.

평창군청직장체육부운영지침개정지침

1. 제안이유

직장체육의 활성화와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군민의 긍지 함양을 위하여 창단, 운영하고 있는 군청직장체육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평창군청 직장체육부의 설치근거, 방침, 조직, 선수및지도자의 자격, 임용 · 해임요건, 임무, 보수, 선수등급, 포상금, 의료비 보상, 퇴직금, 훈련및출전, 합숙소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1호 ~ 1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나. 예규안 : 따로붙임

평창군예규 제 호

평창군청 직장체육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9년 월 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청직장체육부운영지침

1. 설치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방 침

- 가. 효율적인 직장체육부의 운영으로 직장체육의 활성화 도모
- 나. 직장체육부의 우수한 경기력을 통하여 군민의 긍지 함양
- 다.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보호육성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3. 조 직

- 가. 평창군청 직장체육부에는 레슬링팀을 둔다

- 나. 임 원 : 당연직 3명

- 1) 단 장 : 부 군 수
- 2) 감 독 : 문화관광과장
- 3) 주 무 : 체육청소년담당

- 다. 지도자 : 1명

- 라. 선 수 : 7명 이내

4. 자격

구분	연령	학력	경력
지도자	25세 ~ 55세	대졸이상	선수경력
선수	만 18세 이상	고졸이상	선수경력 2년 이상인자

*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준용

5. 임용

가. 직장체육부 지도자(코치) 및 선수는 단장 또는 강원도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나.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지도자는 당해종목 지도자 경력 3년이상 또는 당해종목 선수경력 6년 이상인자
- 2)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선수는 당해종목 선수경력 2년 이상인자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1위 ~ 3위 입상 경력이 있는자

다. 임용시 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 1부.
- 3) 경기실적증명서 (중앙경기단체장 발행) 1부.
- 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5) 건강진단서 1부.
- 6) 경기지도 실적증명서 (지도자) 1부.
- 7) 추천서 1부.

6. 해임요건

- 가.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나.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 다.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 라.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2년간 입상을 못하였을 경우)
- 마.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는 자
- 바.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를 위반 하였을 때
- 사.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7. 임무

- 가.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지휘한다
- 나. 감독은 단장을 보좌한다
- 다. 주무는 단장의 방침을 받아 선수의 발굴 육성 및 훈련, 출전, 일상 생활등 선수단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 라. 지도자는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를 담당한다

8. 복무

- 가. 지도자와 선수는 임용된날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 나. 지도자와 선수의 근무시간은 일반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강화훈련, 선발전에 대비한 특별훈련 기간은 예외로 한다
- 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훈련을 명할 수 있다
- 라. 지도자·선수는 연10일 이내의 연가, 연30일 이내의 병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훈련 또는 경기도중의 사고로 인한 때에는 2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외의 휴가는 주무가 단장의 결재를 받아 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마.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등위 입상을 하였을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9. 보 수

가. 지도자, 선수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은 경력 및 성적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을과 타시도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적용하되 그 기준은 보수등급에 의한다

나.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600%로 하고, 지급월은 1,3,6,7,9,12월로 한다

다. 호봉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 2) 호봉승급은 근무년수를 계산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 한다 (6개월 이하는 절사)
- 3) 초임호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도자(코치) : 일반직공무원 6급 4호봉 상당
 - 선 수(A급) : 일반직공무원 7급 4호봉 상당
 - 선 수(B급) : 일반직공무원 7급 3호봉 상당
 - 선 수(C급) : 일반직공무원 7급 2호봉 상당
- 4) 기타 (특진 및 승급)
 - 국제대회중 A급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B급대회 아시안게임 입상자는 익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승진및승급의 특전을 준다

구분	A급대회	B급대회
1위	1계급 승진, 3호봉 승급	4호봉 승급
2위	5호봉 승급	3호봉 승급
3위	3호봉 승급	2호봉 승급

라. 제수당 및 가계안정비, 효도휴가비등

- 1) 가계안정비 : 년4회로 기본급의 250%를 4회 분할 지급한다
 - 2) 효도휴가비 : 년2회로 기본급의 100%를 각각 50% 지급한다
 - 3) 훈련수당 : 지도자 및 선수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 4) 지도자수당 : 매월 지도자에게 15만원 지급한다
 - 5) 가족수당 : 매월 부양가족 1인당 15천원을 지급한다
 - 6) 급식비 :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7) 대표수당 : 국가대표로 선발된자는 국가대표 기준중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 8) 목욕비 : 지도자 및 선수에게 매월 3만원 지급한다.
-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0. 선수등급

가. A급선수

국가대표 및 준국가대표로 군의 명예선양에 공이 지대한선수나 B급으로써 3년이상 활동한 선수중 그간의 경기전적을 감안하여 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정한다

나. B급선수

A급선수로서 경기력이 현저히 저하되는자 및 C급선수로 3년이상 활동한자와 C급으로 전국단위 대회에서 1위를 2회이상 입상한 선수중 정원의 40%이내에서 정한다

다. C급선수

B급선수로서 경기력이 현저히 저하되는자와 상위등급에 조정되지 않는 선수로 정원의 30%범위내에서 정한다

라. 등급상 · 하향시 조정전의 기본급의 유사 호봉금액을 정한다

11. 포상금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등 전국대회 입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 A급국제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 B급국제대회 : 아시안게임

구 분	국 제 대 회		전국체전	전국대회
	A급대회	B급대회		
1 위	1,000천원	500천원	300천원	200천원
2 위	700천원	300천원	200천원	100천원
3 위	500천원	200천원	100천원	50천원

* 지도자는 최고 수혜 선수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12. 의료비 보상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중 또는 경기중에 발생한 질병치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 퇴직금

군청 직장체육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가. 산정기준 : 퇴지금 = 365일/총근무일수 × 월 평균보수

나. 월평균 보수

퇴직전 3개월 (기본급+훈련수당+월평균상여금+급식비) × 3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에 30을 곱한 금액

14. 훈련 및 출전

- 가. 주무는 년간 훈련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만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훈련방법은 주훈련장(진부학생체육관)에서 훈련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합숙, 강화훈련을 할 수 있다
- 다. 지도자는 주무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상황을 일지에 기록 정리한다
- 라. 대회출전은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와 국제대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한다
- 마.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바. 선수의 기량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전지훈련, 우수선수 초청 훈련,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15. 합숙소 운영

- 가. 선수 숙소는 주훈련장 소재지에 정하며 숙소건물은 임대 사용한다
- 나.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숙소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약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6. 준 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인사관계는 평창군인사관리규정, 복무관계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회계관계는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타사항은 단장이 조정한다

17.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호봉조정에 관한 사항중 4호의 기타 사항은 임용일로부터 소급적용한다)